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 및 개선대책 <4>

김임순, 최원욱,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목 차

1. 서론	2)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화에 따른 선결과제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 현행제도	3) 국가제도와 지방제도의 차이점
가.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하에서의 관련법령의 변천	4)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4) 지방환경영향평가의 제도화 방향
나.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하에서의 주요내용의 변화 및 성과	1) 평가대상의 설정
1)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체계	2) 평가항목의 선정
3) 연도별·대상사업별 협의실적	3) 환경영향평가절차
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	4) 평가담당주체
1) 통합평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변경 사항	5. 지속성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전략환경평가
2) 통합평가법의 법령체계 및 영향평가절차	가. 정책의 계층적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	나.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과 SEA의 필요성
5)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등	1) 연계된 개발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의 한계
3.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2) 사업대안의 검토 제약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전망	3) 누적영향의 간과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및 변천	4) 복수의 소규모 사업과 규제 곤란한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한계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다. 전략환경평가의 유형 및 접근방법
다. 환경정책기본법령 체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라.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실태와 기대효과
1) 환경정책기본법령 체계	1) 세계 주요국가의 도입실태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협의실적	2)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라.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6.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1)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분류	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1) 국내외 제도의 주요 내용
3) 개별법령에 의한 환경부와의 협의대상 행정계획	2) 국내외 제도의 주요 차이점
마. 건설사업의 환경성조사·검토지침	3) 외국제도에 비춰 본 국내제도의 문제점
1) 제정경위 및 기본방향	4) 국내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
2) 건설사업의 환경성 조사·검토제도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원적 개선대책
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상변화와 지방제도화의 요구증대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상 보완대책
나.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화에 따른 문제점 및 선결 과제	3) 건설사업의 환경성조사·검토지침과의 조화
1)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화에 따른 문제점	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구로서의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1) 사전환경성검토와 전략환경평가의 차이점
	2) 사전환경성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환경 평가의 도입
	3) 전략환경평가지도입에 따른 기본이념의 구축 및 전제조건
	4) 전략환경평가제도화에 따른 유의사항
	7. 결론

(2) 사람의 건강보호

등급	항 목	기준(mg/l)
전	6가크롬(Cr ⁶⁺)	0.05
	비소(As)	0.05
	카드뮴(Cd)	0.01
	납(Pb)	0.05
	아연(Zn)	0.1
	구리(Cu)	0.02
	시안(CN)	0.01
	수은(Hg)	0.0005
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0.0005
	다이아지논	0.02
	파라티온	0.06
역	말라티온	0.25
	1.1.1-트리클로로에탄	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디클로로메탄	0.02
	벤젠	0.01
	페놀	0.005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비고

1. 등급 I 은 참돔·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2. 등급 II 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승어 및 낚시 등 등급 I 의 해역에서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외의 수산생물의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 III 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1) 주민의 의견수렴(법 제6조, 영 제6조 내지 제9조)

주민의견의 수렴 및 조치절차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제출, 평가서초안 접수, 평가서초안 검토, 공고, 공람, 주민 등의 의견취합, 주민등의 의견통보 및 평가서 작성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3 참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제출은 시행령 등에서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평가서 초안에는 통합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기재사항,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 영 제6조 및 작성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별로 정하여진 부수를 제출하고 그 명단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상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하나의 사업이 2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의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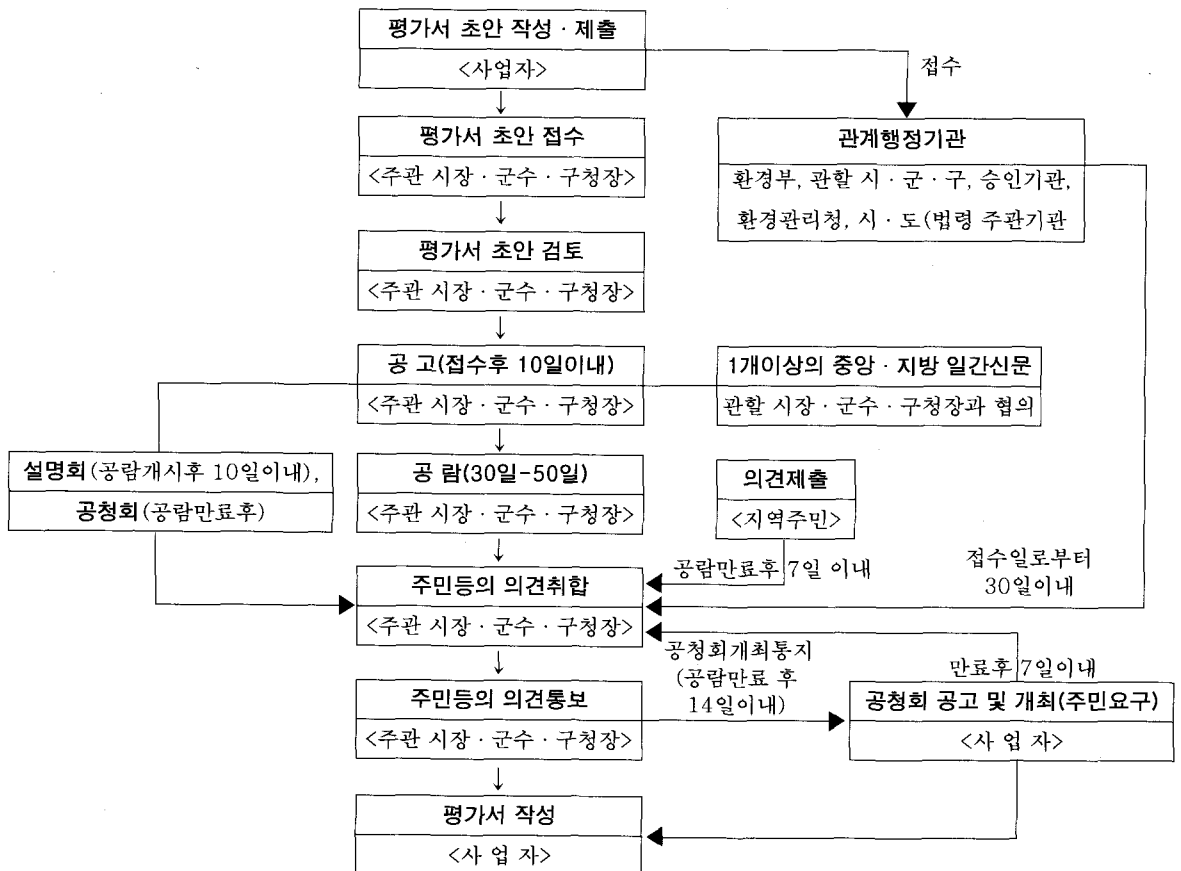
⑥ 공고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면 접수일부 10일 이내에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⑦ 이 경우 지방일간신문은 영향평가대상지역내에서 매일 발행되는 신문을 말하며, 지역주민의 구독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지방일간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반상회보 등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⑧ 공고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공고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설명회 일시 및 장소등



〈그림 3-3〉 주민의견의 수렴 및 조치절차

설명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이 경우 공고내용은 사업개요, 공람 장소 및 기간, 주민 의견 제출의 방법, 기타 공람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옥내에 선정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별 1개 소이상이 선정되어야 한다.

⑩ 영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고 및 공람을 하였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공람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공람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공람장소의 입구에는 공동부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주민의견제출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⑫ 평가서초안은 초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 이상 공람하여야 하고, 공람시간은 매일 업무개시 30분 후부터 업무종료 30분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⑬ 공람장소에는 평가서 초안을 5부 이상 비치하도록 하고, 주민신청이 있을 경우 최소한 1부 이상을 남겨두고 평가서초안을 대여(대여기간에 공휴일 포함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는 시행령 등에서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때에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명회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다만,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따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영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반대 등으로 무산된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별적 서면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설명회는 사업자가 주민의 이해 및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공람기간 초기(공람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내용,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을 주민에게 알려 주는 제도로서 미리 공고한 일시 및 장소에 모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에 대한 설명의 방식을 취하되, 필요시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청회는 사업자와 주민 또는 주민상호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람기간 만료후에 주민의견을 듣는 제도로서 사업자가 설명회 또는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람장소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소제공 등 사업자의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범위 및 취합·통지는 시행령 등에서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이라 함은 대상지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 또는 그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 지역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영 제10조).

②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 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여부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동부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제출서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후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제출의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통보의견 및 스스로의 의견을 공람기간 만료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하

여 영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절차와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평가대행자에 관한 사항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대행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영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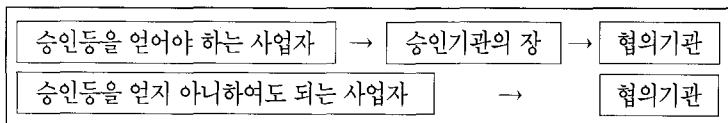
동 조항은 불충분한 평가비용과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로 인한 부실·부정한 평가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정한 규정이다. 강제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공정한 평가서의 작성을 위하여 평가대상 개발사업자와 평가를 위임받는 자간에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평가대행실적을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취합된 평가대행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접수한 환경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평가대행실적과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관보에 공고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³⁾

(1) 협의요청 주체 및 협의기관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



〈그림 3-4〉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절차

된다(그림 3-4 참조).

①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라 함은 영 별표 1의 협의요청시기란에서 “사업계획등의 확정전, 결정전, 수립전 또는 협의완료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를 말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이라 함은 영 별표1의 협의요청시기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인가, 허가, 면허를 하는 기관을 말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을 승인하고 시행을 주관하는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③ 하나의 사업이 2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각의 승인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이를 협의기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 따라 협의기관이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양분 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일괄 협의하도록 한다.

④ 협의기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판단기준(영 별표 4)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외의 사업은 승인기관의 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중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 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지상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의 경우는 예외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관할로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 관할사업중 사업지역이 2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규정된 사업규모(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협의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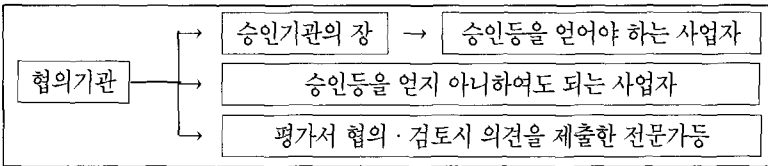
(2)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3) 환경영향평가관련규정집(2001. 5. 환경부발간) 참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라 함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는 시기 또는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과 협의하는 시기를 말하며, 영 별 표1에서 대상사업의 범위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3) 협의내용의 통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의 통보는 협의기관의 장이 승인기관, 사업자, 전문가 등에게 한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통보

①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은 당해 협의내용이 토지이용계획, 각종시설물설계서, 공사시방서등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또한 협의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이러한 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그 자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재수립하도록 한 후 승인 등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승인조건 등으로 부여한다. 또한 사업시행과정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당해 인·허가 또는 승인내용 등에 협의내용이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이 2개 분야 이상의 영향평가대상이 되고 그 결과 평가협의기관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승인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영향평가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의견을 조정한 후 승인기관에 통보한다(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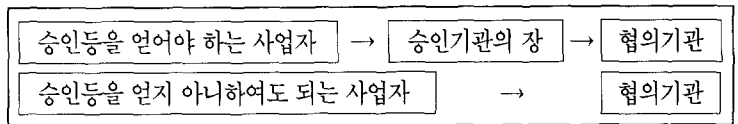
④ 따라서 승인기관은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협의기관이 보내온 협의의견의 상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

협의기관의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된다(그림 3-6 참조).

① 이의신청 대상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평가서에 포함하여 이미 제시한 내용은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협의과정에서 협의기관이 추가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 양자가 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은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가 완료된 후 협의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승인등을 하여야 한다.



〈그림 3-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의신청 절차

다음호에 계속